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10

2016-10호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5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3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자살유족, 심리적 지원 넘은 사회적 지원 필요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등 3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 ▶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9)
- ▶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2)
- ▶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조례 (14)
- ▶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 ▶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19)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22)
- ▶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26)
-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28)
- ▶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30)
- ▶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36)
- ▶ 알파고시대, 서산 교육의 미래 (42)
- ▶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 방안 모색 (48)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 ▶ 서울시의회 자살유족, 심리적 지원 넘은 사회적 지원 필요 (56)
- ▶ 경기도의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58)
- ▶ 전북도의회 소방 현장지휘버스?, 뭣이 중헌디! (59)
- ▶ 전남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촉구 (61)
- ▶ 제주도의회 2016 제주교육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62)

최근 제 · 개정 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65)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 ▶ 산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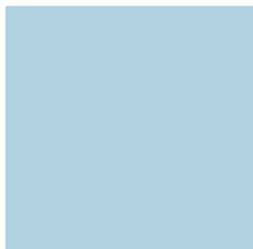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9)
- ▶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7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 [부산광역시조례 제5449호, 2016.11.2., 제정]

□ 주요목적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중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5.] [광주광역시조례 제4795호, 2016.11.15., 제정]

□ 주요목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8.] [경기도조례 제5375호, 2016.11.8., 제정]

□ 주요목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경기도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림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정 및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을 일정기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6.11.4.] [전라북도조례 제4338호, 2016.11.4., 제정]

□ 주요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라북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라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개된 장소에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③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되어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등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라북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3.] [경상남도조례 제4202호, 2016.11.3., 제정]

□ 주요목적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율관리어업 협의회”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율적으로 경상남도의 방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자율방제 활동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시행 2016.11.10.] [울산광역시조례 제1653호, 2016.11.10., 제정]

□ 주요목적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 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자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168호, 2016.11.10., 제정]

□ 주요목적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지정 방안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활동 중인 상인단체(전통시장 상인회 등) 회원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경제과장
2. 지속가능발전과장
3. 도봉구의회 의원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6.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활동가와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가상생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

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1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 회피 · 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 ·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7.]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092호, 2016.11.7., 제정]

□ 주요목적

부산광역시 서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수탁기관”이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③ “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6.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 ④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⑤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2.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 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및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시행 2016.11.7.]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390호, 2016.11.7., 제정]

□ 주요목적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동 단위의 민간 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연 1회에 한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교부·집행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



2. 학계 · 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마을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4.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시행 2016.11.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285호, 2016.11.8., 제정]

□ 주요목적

울진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3. “교복제공자”란 교복이용권 소지자에게 교복을 제공하도록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선정한 교복판매점을 말한다.
4. “교복이용권”이란 그 소지자가 교복제공자로부터 교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에게 발행하는 교환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군수는 다른 시·군 관내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지원액은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입생의 입학 전에 각 학교별 신입생의 수를 파악하여 각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복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신청자에게 교복이용권을 지급한다.

제7조(교복제공자의 등록) ① 교복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교복제공자가 교복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 심의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등록된 교복제공자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등록사실을 알리는 표지(標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표지를 회수한다.

⑤ 등록증·표지가 손상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교복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표지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복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울진군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총무과장, 울진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울진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2. 위촉직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복제공자의 선정
2.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및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반납 및 환수) ① 교복을 지원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교복 지원 후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중복지원금을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088호, 2016.11.10., 제정]

□ 주요목적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

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창 및 인증서 교부
2. 종량제 봉투 지급
3.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4.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6. 10. 26.(수) / 충남천안교육지원청>

총 평



금번 토론회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으로,

참석자 대부분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강화 및 의용소방대원의 책임감 강화, 의용소방대와 소방본부, 소방관서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 강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이에 대한 체계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또한,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의 소방 및 구호활동에 필요한 구호장비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그에 따른 예산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생활밀착형 소방관서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 현재의 건축 환경과 사회구조 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라 재난 양상의 복잡·다양화되고 소방 수요와 도민의 안전욕구 증가함에 따른 소방관서 주도의 소방안전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여 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의 소방안전정책 일부분을 분담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직체로 운영되는 획일성으로 인해 조직 운영이 어렵고, 주위의 환경변화에 둔감하며,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장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 부족과 관 소방과 달리 조직체계에 대한 정비도 부족한 현실임
- 일부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적 여론 조성으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 감소 및 역할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본 토론회에서의 주요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 첫째, 민간자율봉사단체로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소 방안 및 정체성 확립과 의식 함양 방안
 - 둘째, 의용소방대의 본래 역할강화와 재난양상을 반영한 신규 활동영역 발굴
 - 셋째,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넷째, 우수대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봉사단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향 제시

2 지정토론

① 이호명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첫째, 우수한 능력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 ① 신규대원 모집 시 전문자격 취득자 우선 선발
 - ② 젊고 유능한 신규대원을 중심으로 각 의소대별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 둘째,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 ① 중양소방학교와 충청소방학교에서의 의용소방대 교육 과정별 실무 교재 발간 및 보급
 - ②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확대 보급
 - ③ 실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적극 참여
 - 셋째, 의용소방대원 개인 안전 장구 확대 보급 및 현장 활동 지원체계 구축

② 김형미 (친서민 봉사단체로서 이미지 구축 강화 방안)

-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역할 증대를 통해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증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전과 생활정착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 첫째, 도민의 생명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수호천사 활동 강화
 - 둘째,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위해 지역마을회관이 나 복지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화재예



방, 전기, 가스 안전사용요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셋째, 외국인들의 안전한 생활정착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의 확충 및 구체적인 역할 부여를 통한 다문화 가정도 우리 지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③ 김태익 (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의용소방대의 발전방향으로

- 첫째, 의용소방대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 확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본인의 전문성을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여 관설 소방과 의용소방대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 둘째, 조직 내 기존 대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교육훈련의 활성화를 통해 현재 월 1회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한계에서 벗어나고, 소방관련 자격증 등의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성과지표로 삼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 셋째, 의용소방대가 단순 소방공무원을 보조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율적 재난대응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변화와 함께, 양자 간의 주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방안으로 의용소방대원에게 보급되는 개인안전장구의 실질적 보급률을 높이고, 소방조직의 미비한 점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3 청중토론 등

< 토론자 토론 >

- 의용소방대원 신규 모집 시 자격 제한 문제

[질의: 김태익(소방행정과장)]

⇒ 입대 시 안전 관련 자격증 등의 전문성 검토 후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등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답변: 이호명(연합회장)]

- 의용소방대원 신규 모집 시 인성, 지역사회 여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신규대원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

[질의: 김태익(소방행정과장)]

⇒ 의용소방대와 소방관서와의 소통과 함께 정기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모집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답변: 이호명(연합회장)]

< 청중 토론 >

- 신규 여성회원으로서 정규 교육이외 시간적 문제와 기존 매뉴얼 등에 따른 교육 시 구두교육과 문서교육 위주 시행으로 업무 이해도가 떨어짐, 이에 각 주제별로 동영상 교육 등으로 다양한 교육방법 필요

[질의: 서북 의용소방대원]

⇒ 전문교육과 정신 교육등 다양한 교육 등이 있으나, 이에 현재 운영중인 교육 내용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영상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음

[답변: 김태익 소방행정과장]



- 소방대장의 경우 일정의 리더십 교육과 그에 관련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질의: 목촌 의용소방대원]

⇒ 충남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장단 워크숍을 개최('16년)하였으며, 이에 17년부터는 부대장, 총무반장 등으로 워크숍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답변: 이호명 연합회장]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의용소방대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2.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 방안 마련
3.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장비 및 소방관계 시설의 확충 방안

<성 과>

- 의용소방대원들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 의용소방대의 기존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 논의

알파고시대, 서산 교육의 미래

<'16. 11. 4.(금) / 서산문화복지센터>

총 평



금번 토론회는 알파고와 인간의 대결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긴급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교

육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참석자 대부분은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암기, 숙지위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놀이, 창의력, 학생들의 역량 강화 위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충남의 학교혁신과 참학력의 교육정책 추진이 미래 교육을 위한 대안으로써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 이광호 (이우 중 · 고등학교장) >

○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다보스포럼) :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의 기술적 융합과 속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산업혁명과 확연한 구분

○ 알파고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당면 과제

- 한국의 사회 ·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 - 인구절벽시대 도래
-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와 승자독식의 사회시스템 강화 및 사회안전망 취약
-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학교 교육에 투영되고 이에 교실 붕괴 가속화
- 극심한 이기적 경쟁속에서 공동체적 연대감, 사회적 책무성 등 민주시민의 자질 교육 미흡

○ 핵심역량 교육 혹은 역량기반 교육과정등 기존 학력의 개념을 넘어 역량중심의 학교 교육 개혁 노력

- 경기도 교육청, 2012 경기도 교육과정을 통해 7개의 혁신역량 (창의지성역량) 제시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및 지속적 추진중
- 미국의 NACE, 협업능력 혹은 팀워크, 리더십, 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제시

○ 마지막으로 알파고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 기존의 교육관념, 즉 패러다임 극복을 위해 학교 교육을 인문

적 소양과 기본적인 역량(자율성, 협업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노동시장과 연관된 영역은 별도의 직업교육, 평생교육에서 담당

- 기존의 초-중-고-대학-취업으로 연결되는 단선적 위계 구조에서 탈피하고 고-직업교육-취업(+대학)-평생교육, 고-평생교육-대학-직업교육 등으로 다변화
- 알파고 시대에 적합한 학력, 역량 개념의 재정립 요구와 근본적인 연구와 실천이 요구되며, 알파고시대에는 개인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실험과 도전이 용인되는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인구절벽 시대에 개인은 소중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학습과 성장의 개별화,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반영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지정토론

① 장우현 (서산대진 초등학교장)

○ 행복을 함께 나누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복나눔학교 사업의 목표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미래지향의 공교육 정화모델학교 육성 및 운영,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나눔학교 사업이 제4의 물결을 지향하는 사회의 기대에 충족시킬 것임
- 행복나눔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은 교육과정의 교육철학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 아이들을 끌고가는 교육이 아닌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지향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가는 교육과정임

- 학교운영은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조력자 및 협력자 역할과 다양한 평가방식 및 그에 따른 가정 통지로 인해 가정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
- 교육공동체로써의 모두가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 등을 강조

② 최일성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해서 먼저 경험기반 학습 능력과 자기 표현력을 강화하고 이는 학생이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단순한 지식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며, 탐구하는 방법, 수많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의 일방적 지식 전수 교육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과 가설 설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취합 및 탐구과정을 가르쳐야 함

③ 심주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정책국장)

- 아이들의 삶속에 스스로 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
 -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놀이를 통해 친구와의 협력과 융합을 배울 수 있음
 - 또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

- 이에 혁신학교가 성과를 내는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수업을 하고, 학생자치를 도입했기 때문임

④ 윤여준 (충남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 학교혁신의 내용과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참학력)에 대한 설명
 - 학교혁신이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성찰하고 바꿔보자는 것이며, 소통과 협력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낡은 것은 바꾸어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
-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학교 교육은 선대의 지레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후대에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
 - 둘째,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물건의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
 - 셋째, 성숙사회가 되면서 모두의 가치관,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 취미가 다양화 되는 등의 주어진 정답만을 따라가는 과거의 교육으로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새로운 정답을 만들어 새로운 교육방식의 전환이 필요
- 이에 충남의 참학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식 전달과 암기 위주의 학력을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교육’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 둘째, 참학력은 아이들이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시험공부 중심의 학력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여 그에 합당한 역량을 기르는 진로공부를 중시한다.
- 셋째, 참학력은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미래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 넷째, 참학력은 아이들이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생명존중 및 생태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사회·경제적 변환에 따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요구
2. 교육방식의 전환 요구(가르치는 교육방식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해결방식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
3. 초-중-고-대학-취업으로 연결되는 단선적 교육 위계 구조에서 탈피하고 고-직업교육-취업(+대학)-평생교육, 고-평생교육-대학-직업교육 등으로 교육 위계 구조의 다변화

〈성 과〉

-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양상과 함께 새로운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존 교육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충남의 참학력 및 참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 방안 모색

<'16. 11. 11.(금) / 천안시 동남구청>

총 평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상인, 관련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로

천안 원도심 재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

참가자 대부분은 천안만의 콘텐츠를 발굴·기획하여 상업적·소비적 도시의 이미지를 버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시의 정체성, 삶의 질, 커뮤니티 복원차원에서 사람을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주민 및 상인, 관계 공무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예산소모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성남훈 사진작가>

-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건축물 재생을 위한 방안보다는 지역민들에게는 추억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지역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사진의 예술성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사진의 중요성을 역설함
- 천안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예술적 거점을 마련, 일반인들의 사진과 영상매체를 통해서 SNS에 먼저 화제의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익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가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사진, 영상, 음악이 결합된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일반인과 예술가들이 상호 교류하고 공존하는 벨트를 형성하여야 함

<임준홍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원도심 내의 빈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기획을 해야 하며, 현재 원도심 내의 건물 3채 중 1채가 공실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문화예술의 시민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약적인 다문화 공간을 형성하여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천안 원도심은 상업적 공간이 주를 이뤄 정체성이 없고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 공간이 없으므로 빈공간을 활용하여

구역별로 테마를 정해 장소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단체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함

- 원도심 재생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담을 것이 청년, 문화, 다문화로 꼽혔는데 현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보다 지역민의 노력이므로, 지역민과 상인 간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

② 지성토론

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원도심 쇠락의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므로, 단기적인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원주민 축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목표가 불분명한 사업, 예산소모성 사업,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에 공공기관이 주체로 나서는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원도심을 채울 콘텐츠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수렴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물리적 공간의 개선이 아닌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② 전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원도심의 문제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년간 도시계획의 실패가 핵심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컨트롤 타워 부재로 사업의 지향점이 모호함. 원도심은 도시의 정체성, 삶의 질, 커뮤니티 복원에서 바라봐야 하며, 인구유입 전략이 최우선 돼야 함

- 홍익대, 상명대는 자교출신의 예술가들을 자가지역으로 유인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예술인들의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과 방문객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수익창출로 이어져 현재의 홍대상권 발전을 이끄는 잠재력을 터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

③ 김 현 (단국대학교 교수)

- 천안역 주변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한 노력과 예산이 투입된 결과, 활성화 기틀이 마련돼 있음에도 빈점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주요 교통결점으로 부터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방문자들의 목적시설 부족, 퇴폐업소와 빈 점포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의 인식이 존재함
- 천안에 분포하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창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시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착한 임대인’ 정책과 청년창업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함

④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 원도심의 재생은 단기적인 사업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의 연계, 지역기업(삼성SDI, 대형교회 등) 등의 나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화 사업 및 사업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심 유도를 도모해야함

- 천안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중심으로 구역별, 공간별 특화의 필요성과 공영주차장 및 공원·녹지 확충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보, 기존의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끌어내 사회통합도 도모해야 함

⑤ 박상일 (천안시 명동대흥로 상인회 사무국장)

- 젊은층 끌어들이기, 문화콘텐츠 끌어오기, 저(미)이용 토지활용 등으로 편중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실있고 참신한 아이템을 적극 개발·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민관협치의 시스템을 강화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개발하여 현실적인 문화와 상업적 예술활동, 다문화 등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통해 인구유입을 도모해야 함

③ 청중토론 등

- 공간 활용, 청년정책, 문화시설의 증대와 함께 지역 상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좋겠으며, 추후에 있을 의정토론회는 재생방안의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상인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최광윤 오빠네게스트하우스]

⇒ 금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내실있는 원도심 재생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또한 원도심 재생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와 행정이 서로의 장점을 매개로 협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

- 지역상인들이 느끼는 원도심 쇠락의 원인 중 하나는 주차공간의 부재로 인해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외에도 지역민과 지역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상인]

⇒ 다양한 방안과 사례를 통하여 천안만의 정체성을 찾는데 노력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자원을 토대로 연구중이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모아 역동적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 원도심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정체성을 찾아야 함. 또한 방문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무료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공역 기획자로부터 천안 원도심을 기피하는 장소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임병덕 감독]

⇒ 천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잘 살리기 위해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이를 통해 천안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접점을 잘 살려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4 종합좌장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

- 금번 의정토론회는 쇠퇴하고 있는 천안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자리이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수렴하여 천안이 가지고 품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을 끌어와 주민의 자력재생 유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과 관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천안 원도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2. 천안만의 지속가능한 가치있는 콘텐츠 개발
3. 지역주민, 상인과 천안시청(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4. 사진으로 매개체로 하는 다양한 홍보방안 활용

〈성 과〉

- 지역주민, 상인,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의견 제시
-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천안시만의 문화예술 공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자살유족, 심리적 지원 넘은 사회적 지원 필요

자살예방센터의 유족지원 영역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장례 지원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1월 2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자살예방센터의 위기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유족을 위한 장례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원 의원은 “사전예방에 힘써 자살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장례 지원도 신경써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대부분의 자살자 가족들은 마주한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혼란을 겪는다. 김창원 의원은 “처한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보장서비스 측면에서 장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유족을 위해 심리정서 회복캠프, 애도상담, 내소상담, 블로그 운영, 소모임 결성 등의 심리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장례 절차 지원 등의 사회적 도움은 전무하다.

김창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서비스 측면에서 장례 지원을 하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



는 취지” 라며

“장례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가족, 지인의 연쇄 자살을 막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장례식장에 자살예방센터 브로셔 등을 배치해놓는 경우는 있으나 절차 지원은 없다.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미래젠더포럼이 주관한 본 토론회는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옥분 의원은 토론회에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야말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며

“2016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총액은 약 2조 1,928억원이지만 이는 여성,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각 분야를 총 망라한 예산으로 여성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의 경우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구축 사업,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여성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을 통한 여성고용 안정화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소방 현장지휘버스?, 뭣이 중헌디!”

전라북도의회 정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도 소방본부가 2017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 구축예산에 6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가 배치기준대비 28대나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이 시급한지 모르는 근시안적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영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에 현재 배치된 구급차는 총 74대로 구급차 배치 기준이 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의거 총 102대가 있어야 하지만 28대가 부족한 상태다. 전라북도에 배치되어 있는 구급차는 평균 7분에 1건 정도씩 출동하고 있다(16.9.30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2017년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통합지휘 기반 구축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6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정책의 시급성을 따지지 않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며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2009년 넓은 공간 확보와 환자에 대한 편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당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벤츠구급차를 9대나 구입했다. 하지만 5년이 조금 지난 현재 좁은 길이 많은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과도한 차량유지비가 든다는 이유로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폐차시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판이 무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올 추경예산에 반영해 각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텐트를 설치한다며 2억 2천여만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6억원에 달하는 현장지휘버스 구입은 일부 기능이 중첩되고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호영 도의원은 “현장의 컨트롤타워도 좋지만, 구급차가 없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 확보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에서 추진한 정책연구과제들의 결과물이 다양한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활동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도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결과가 도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과제 수용률은 65% 수준이며, 장기과제 보다는 단기과제의 정책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택희 의원(순천, 무소속)은 “연구원에서 내놓은 정책연구 결과와 제시한 대안의 당위성을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한 과제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연구원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정책 수용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 제주교육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교육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6 제주교육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성균 위원장은 사회환경과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로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진로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질 제고, 교수학습 콘텐츠 보급의 확대,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윤경 진로교육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진로교육, 창의적·주도적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송응식(제주관광대 교수), 오경훈(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양창수(과학교 교사), 황경남(제주중앙고 운영위원장), 김형훈(미디어제주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으로 진로체험 기회의 제공,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동아리 활동강화 등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성균 위원장은 자유학기제의 시행과 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진로 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진로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진로교육 체계를 함께 일구어 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4호, 2016.5.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위기 가족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정서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현행법의 모성보호와 출산환경 조성에 더하여 부성보호와 육아환경조성 지원의무를 규정(제8조제2항).

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유급휴가시책에 더하여 육아 및 육아휴직 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제21조제3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의해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21조의2).

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21조의3).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1조의4).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01호, 2016.1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의 장 등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외에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범위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내용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조치의 범위(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의 장 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의 마련,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으로 정함.

나.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내용(제2조제10항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596호, 2016.1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숲속야영장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산림의 면적을 종전에는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자동차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야영공간을 종전의 81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등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학에서 학사학위 등을 취득한 사람 외에 독학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도지사의 산림육장 등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의견16-0238, (회신일자)2016-09-20

【질의요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내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부산광역시규칙안”이라 함) 제12조의7에서는 희망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규칙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과 유사한 ‘희망퇴직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 있는지와, 부산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단원과 직원의 호봉사정, 급여, 제수당(“예능연구 보조비”를 포함한다),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희망퇴직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같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산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복



지체계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5. 20. 의견 16-0104 참조). 따라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자치사무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내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건번호)의견16-0245, (회신일자)2016-09-22

【질의요지】

가.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사용 허가 시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다목적 생활체육관 이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산시에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허가 시 우선권 부여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사용 허가 시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산시 조례안”이라 함)은 경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제1조)으로서, 제2조제2호에서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이용자”란 개인 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4조제2항에서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동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른 ‘사용료’는 경산시 조례안에서 규정한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의미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경산시가 ○○동 주민들에 대해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취지가 단순히 소재지 주변지역 주민이라는 사유가 아니라,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당시 ○○동 공사구간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인하였어야 하는 피해나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부담이 발생한 점에 대한 보상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의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경산시 조례안에 ○○동 주민들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경산시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고 하면서 각 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제1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제4호)’, ‘경기 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제5호)’,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제6호)’,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따른다고 하면서 ‘1순위: ○○동 주민(제1호)’, ‘2순위: ○○동 이외의 경산시 주민(제2호)’, ‘3순위: 경산시 지역 이외의 주민(제3호)’를 각 호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사용 허가 시 ○○동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령에서도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산시에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허가 시 우선권 부여를 통해 ○○동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경산시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동 주민에게 다목적 생활체육관 사용 허가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1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